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29. 강득구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4. 7.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득구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대훈)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은 기존에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1].

한편,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는 학생선수들이 많고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4월 체육특기자가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해당 발표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하여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은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거쳐[2] 지난 2021년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됨[3]. 참고로, 시행일을 공포

---

1) **「학교체육 진흥법」**[법률 제11690호]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0037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2540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3438호)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의안번호 제2108340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923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795호) 참조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여 2024년 3월 24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의 개정 또한 함께 이루어졌는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4]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를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라고 규정하여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학생선수가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간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수업 결손이 없는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히 규제가 과도하

---

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는 민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 4월 9일에는 일부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에 있음[5].

참고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역시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는 학생선수는 2024년 9월 1일부터 발생함. 교육부에 따르면 참가 제한 학생선수의 통계는 현재 집계 중에 있음.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현황 >

(단위: 명, %)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2023년 2학기	2024년 1학기
초등학교	572(2.5%)	490(2.2%)	682(3%)	445(1.9%)	집계 예정
중학교	4,162(16%)	4,282(17.8%)	4,211(15.9%)	4,168(15.9%)	
고등학교	2,244(10.9%)	2,189(12.5%)	2,149(11.2%)	1,980(10.2%)	
계	6,978(10.1%)	6,961(10.9%)	7,042(10.3%)	6,593(9.5%)	

자료: 교육부

개정안에 따라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학생선수들의 운동선수로서의 역량 강화와 커리어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음악 및 예술 등 예술 계열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5)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단서 위헌확인(2024헌마319)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강득구 의원과 서지영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